

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3. . .  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
- 나.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확대 및 특별정책고문 위촉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시정 자문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위원장 등 위촉 방법 변경(안 제2조)
  - 현행 : 20명 이내 → 개정 : 100명 이내
  - 현행 : 호선 → 개정 : 시장이 지명
- 나. 사무의 위탁 조항 정비(안 제4조의2)
  - 현행 : 위원회에 위탁
  - 개정 : 지역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
- 다. 특별정책고문 조항 신설(안 제8조)
  - 필요 시, 10명 이내 위촉
- 라. 특별정책고문 위촉에 따른 수당 조항 정비(안 제12조)
- 마.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(안 제13조)
- 바. 인용하고 있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2조, 제14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 전단 중 “20명”을 “1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조사 및 연구를 위원회”를 “위원회 운영 및 정책 연구·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역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 시”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, 제8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특별정책고문)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책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특별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
2. 경제, 문화·관광, 농업, 여성, 복지,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특별정책고문은 10명 이내로 한다.

제13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 및 특별정책고문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수 있다”를 “수 있으며, 특별정책고문에게는 별도의 활동보상금 또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특별정책고문이 기업유치, 예산절감 등 시정에 기여한 경우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, 「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특별정책고문이 국책사업 유치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④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4조(중전의 제12조) 중 “,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, 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당 등 지급기준 (제12조제4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  | 지 급 기 준 액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회의참석<br>수 당  | 1회당 100,000원 한도에서 지급   |
| 자 문<br>수 수 료 | 1회당 1,000,000원 한도에서 지급 |
| 활 동<br>보 상 금 | 월 1,000,000원 한도에서 지급   |



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포럼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업무를 지역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-----  
-----  
----- 필요 시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특별정책고문)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책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특별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
2. 경제, 문화·관광, 농업, 여성, 복지,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특별정책고문은 10명 이내로 한다.

제8조 ~ 제10조 (생략)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

제12조(수당 등) ① -----  
-----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  
-----  
- 수 있으며, 특별정책고문에게는 별도의 활동보상금 또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특별정책고문이 기업유치, 예산절감 등 시정에 기여한 경우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, 「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특별정책고문이 국책사업 유치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

|  |  |
|--|--|
| <p>&lt;신 설&gt;</p>   | <p>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성과<br/>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<br/>는 제외한다.</p>   |
| <p>&lt;신 설&gt;</p>   | <p>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<br/>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 |
| <p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<br/>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<br/>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<br/>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관계규정<br/>을 준용한다.</p> <p>제13조 (생 략)</p> | <p>제13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 및 특<br/>별정책고문은 위원회 활동을 통<br/>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<br/>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<br/>니 된다.</p> <p>제14조(준용) -----<br/>-----<br/>-----, 「구미<br/>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<br/>-----.</p> <p>제15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</p>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생략

##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## 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③ ~ ⑤ 생략

#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재정수반 요인

- 특별정책고문을 위촉할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 또는 자문수수료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이 예상됨(안 제12조)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조례 [별표]에서 규정한 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하며,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.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정책고문을 최대로 위촉할 경우, 활동보상금 또는 자문수수료 지급을 위한 비용이 연 1억3천만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.

[표]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계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계      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650,000 |
| 활동보상금   | 120,000 | 120,000 | 120,000 | 120,000 | 120,000 | 600,000 |
| 자문수수료   | 10,000  | 10,000  | 10,000  | 10,000  | 10,000  | 50,000  |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    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계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국비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도비      | 일반회계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| 특별회계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| 기금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시비      |     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650,000 |
| 민간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기타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합계      |     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130,000 | 650,000 |

#### 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특별정책고문 위촉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#### 6. 작성자

- 정책기획과 기획계 윤정현(480-650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특별정책고문 위촉에 따른 소요비용

- 활동보상금 :  $1,000,000\text{원} \times 10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120,000,000\text{원}$
- 자문수수료 :  $1,000,000\text{원} \times 10\text{회} = 10,000,000\text{원}$
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| 정책기획과               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김 은 영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박 상 진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윤 정 현<br>(480-6502) |